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4차 회의

2004. 2. 9.

#0. 참가단위

법. 이. 공. 조. 11. 생. 조. 1.

#1. 보고 안전

- ### 1. 새터 내규 홍보 영상물

- ## 2. 새터 내규 만화

- ### 3. 새터 내규 자료집

- 글: 신년 으늑 밤.
- 과/반 회장의 한 마디 → 공대.(으늑). 사해선. 신년.
- 세터 내규에 대한 FAQ → 내일 아침까지.

4. 퀴즈 상품 → 이라대: 1등 2등 3등 (식권). 합대: 미지.
 - 생리대: 식권.
 - 교육대: 미지이나, 문제.

#2. 논 의 안 건

1. 영상물 저작비: 300만원 → 주소 YTV YBS

2. 만화

- ③ 새터 반성폭력 내규 교양 신변보호.
법대: 미학정 / 교육대: 자료조사 / 문대: 내일공월회 (총여) / 공대: 내일공월회 / 생양대: 신변교양
4. 새터 내규 포스터 -> 강조할 문구 선정
OT제에.

다음: 회의까지.

#3. 기타

- 이러한 시제1 자료집 → 반응능력 증. 관상 때 : 여하 수용의 필요성 명

다음 회의때 →

- 신규 득액상대 방법
- 신규 하는 방법

- 연세대학교 요양원의 개혁: 반영록 교양 사업, 교양, 행정, 힘 모으기.
학자특성 함께. 학자특성 / 교육 영양.
계속 교육 이해 이해. 자신 이해 이해.

*첨부자료

피해자의 상황 이해하기 → 주변인으로서 피해자 도와주기

1. 성폭력적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불편함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 1) 흥겹게 놀아야 하는 분위기를 자신이 망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 2) 성폭력은 대부분 친한 친구나 선후배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친한 친구나 선후배 사이가 어색해질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 3) 새내기가 선배에게 성폭력을 경험했을 경우 새터 시기 처음 만난 선배에게 문제제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 새터 때 새내기들의 대부분은 선배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한다.

2. 성폭력 피해자는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기도 한다. ‘혹시 내 옷차림이나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 것이 아닐까’, ‘왜 그 때 싫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등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일뿐이다. 성폭력이 일어난 탓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은 가해자의 가해 행위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성폭력이 피해자의 탓이 절대 아님을 환기시켜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피해자를 비난하기보다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3. 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가해자를 멀리하고 싫어하고 사건을 다시 떠올리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 위와 같은 상황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선배나 동기가 사건을 알게 되고 피해자가 사건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고, 피해자를 다그치지 않아야 한다. 사건의 당사자이자 사건을 성폭력으로 인지하고 판단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피해자이다. ‘그런 일은 별 거 아니지 않아?’, ‘뭘 신고까지 하니?’ 등의 이야기는 피해자의 경험을 무시하는 발언이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을 수 있게 해야 한다.

5. 사건이 신고되면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를 신뢰한다는 느낌을 줘야 한다.

6.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경험을 이해하며 들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피해자가 상처를 극복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가능한 선택지들을 이야기해준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 교양을 위한 프로그램 예시

1. 최소한 OT기간과 수련회 초반에 새터 반성폭력 내규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의미를 공유하는 자리를 따로 마련하기 어렵다면 OT와 수련회 첫날 단체 학우들이 다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간단한 소개 정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이때 주로 말해야 할 것은 새터 반성폭력 내규가 있다는 것,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의미, 성폭력 사건의 신고통로 등이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가 우리들 스스로 지켜야 할 자치규약이며 예방을 주목적으로 함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새터 기간을 보내자는 당부의 말 정도를 해 주는 것도 좋다.

2. 각자의 성폭력에 대한 생각 알아보기

- 비교적 규모가 작은 자리에서 교양프로그램의 도입부에 하면 좋은 아이템이다. 우선 종이를 나눠주고 ‘성폭력 하면 떠오르는 것’ 혹은 ‘무엇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쓰도록 한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섞은 후 하나씩 뽑도록 하고 뽑은 것을 읽도록 한다. 그 후에는 읽은 것을 쓴 사람이 왜 그렇게 썼는지 들어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해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3. 직·간접적인 성폭력의 경험나누기와 그 대처방안 이야기해보기

- 자신이 겪은 성폭력적인 경험이나 성폭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목격한 것이나 매체 등에서 접한 것), 주위 사람들이 겪은 성폭력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본다. 이 때 구성원들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 공동체의 성문화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성폭력의 경험을 나눈 뒤에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해 본다.

4. 새터 반성폭력 내규 재구성해보기

-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교양이 이루어진 뒤에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새내기들보다는 선배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사정에 맞게 재구성해보는 것이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가 여러 조항으로 구성된 법조문과 같은 형식을 띄고 있다면 이 때 만들게 되는 자치규약은 ‘이러한 것은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합시다’ 와 같은 형식의 10개 이내의 항목으로 구성하면 될 것이다. 자신들이 지켜야 할 자치규약을 스스로 고민하고 만들어본다는 의미를 살리려면 공동체 구성원들의 경험으로부터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것이 좋다.

새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과 실제로 사건이 신고되었을 때

1. 성폭력적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이 있을 때 학생회장, 집행부, 선배 기획단들이 그때마다 주의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단, 그것이 강제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그 상황이 왜 성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2. 새터 시기 성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과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새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인지시켜야 한다.

예) “어디어디에 신고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반 학생회장이나 XX대 주체 이 분에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000호로 오시면 됩니다.” 등

3. 성폭력 사건이 신고됐을 경우 최대한 친분이 있는 동성의 선배나 동기로부터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때 성폭력 사건이 신고된 경우라는 것은 꼭 공식적인 통로를 통한 신고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4. 새터 시기 성폭력 사건은 신고함이나 단대 학생회로 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주로 친한 선배나 친한 동기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고 과반 학생회 정도가 사건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단대 학생회까지 사건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과반 학생회에서 사건을 ‘잘’ 처리해야 한다. 이런 경우 과반 학생회에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도록 과반 학생회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든지 사건을 해결하기로 맡은 사람 이외에는 피해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최선이며, 대책위원회가 꾸려지더라도 피해자의 신원은 절대적으로 보호되고, 그렇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혹은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 사이 관계가 친밀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조용히 넘어가자’ 류(類)의 말로 사건을 덮어두자고 하는 것은 금물! 그런 식의 해결은 해결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이후에 또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조장하는 것일 뿐이다.

5. 사건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해결하는 순서

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조차-일반적으로 ‘XX 비상대책위원회(준)’-을 꾸린다. 주로 학생회가 될 수 있겠지만, 학생회 집행부가 모두 참여하는 것보다는 담당하는 주체 한 명과(피해자와 가해자의 소속이 다르다면 각 소속 학생회에서 각각 한 사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 정도로 꾸리는 것이 좋다. 이 때 가해자가 속한 학생회에서 대책위 에 참여하는 것은 가해자를 두둔하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속한 공동체로서 책임을 사건 해결에서 그 후속작업까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다.

① 피해자에게 대책위가 어떤 어떤 구성원으로 꾸려지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지 충분히 설명해준다. 언제든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② 피해자의 진술서를 받는다. 비대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참고인 진술을 받거나, 피해자의 보충 진술을 받을 수도 있다.

③ 가해자의 진술서를 받는다.

④ 사실 확인을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 면담을 할 수 있으며 면담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면 좋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기록을 분명히 남기기 위해 녹음을 하는 것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서면으로 확인 서명을 받아놓는 것도 좋다.

⑤ 사실 확인이 되면 비대위에서는 사건 규정을 내린다. 예를 들어, 이 사건의 경과는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성폭력이라고 규정한다. 사건 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비상대책위원회(준)이 ‘비상대책위원회’가 된다.

⑥ 피해자에게서 가해자에 대한 요구안을 받는다. 그리고 비대위 내부에서 요구안이 맞는지 검토한다.

⑦ 요구안을 가해자에게 전달한다.

⑧ 가해자가 요구사항을 하는지 비대위는 책임 있게 확인한다.

※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총여학생회에 연락을 할 수 있다.

6. 한편 과/반학생회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의 경우 사실 그 피해자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기는 쉽지가 않다. 그런 경우라도 학우들과 함께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 그런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의 가해가 이루어지기 쉽다. 2차, 3차 가해가 이루어진다면 그것 역시 성폭력 사건으로 신고 가능하다.

사건이 해결이 된 이후 사건 해결 과정을 그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것이 기본(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폭력에 대한 토론회나 간단한 세미나, 관련 영상물 보기 등을 통해 공동체 내 성원들과 함께 성폭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이후의 성폭력도 예방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 여기서 잠깐! → 2차, 3차 성폭력이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후,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혹은 가해자에 의해서 다시 피해자에게 이루어지는 폭력을 가리킨다. 피해자에게 사건을 조용히 있으라고 강요한다거나, 사건을 공식적으로 해결할 경우 혹은 신고할 경우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언사는 모두 2, 3차 성폭력으로 볼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 ‘그걸 가지고 성폭력이라고 하다니, 이상한 애다.’ 등의 언사 역시 그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행위들은 피해자들의 성폭력 경험을 남성중심적인 성담론에 기대어 부정하거나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이 된다. 또한 이런 언행은 이후 똑같은 성폭력 행위들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7. 과/반 학생회에서 나름대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처리과정을 단대 학생회로 보고하도록 하자. 그래야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대 학생회도 마찬가지다. 단대 학생회로 보고되는 사건 개요와 사건처리과정, 그리고 단대 학생회에서 직접 처리한 사건 개요와 사건처리과정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서 총여학생회에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새터내규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경험의 축적과 이후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다.

8. 사건 해결을 할 때 피해자의 의지와 의사가 가장 우선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피해자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에게 올바른 사건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충분히 말해줘야 하고, 최대한 사건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건을 신

3

고하고 나서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공식적으로 대책위를 세워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공식적 해결은 공개적 해결과는 다르다)은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절대 사건을 확대하는 방법이 아니다- 사건이 묻혀지거나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다른 가해를 할 가능성을 최소로 줄이고, 뒷소문만 무성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다.

성폭력이란 무엇일까요?

남성중심적이고, 이성애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일상적인 섹슈얼리티와 비밀상적인 폭력사이의 경계는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고문, 강제, 폭행과 같은 전형적인 폭력의 기호들과 맞물린 성폭력 사건들이 아니라 오히려 친교, 우정, 연애, 사랑과 같은 친밀성의 기호들에 둘러싸인 섹슈얼리티로부터 어떻게 폭력이 발생하며 그것이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논쟁이 된 성폭력사건들은, 성해방을 여성해방과 동일시하고 프리섹스에 동의하지 않는 여성을 '순결이테올로기에 갇힌' 개인들로 치부함으로써 성폭력을 자행하는 문제를 보여준다. '성폭력'이란 개념은 이제까지의 성에 관한 보수주의 담론, 즉 여성의 성적 욕망과 쾌락을 부정한 채 순결과 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부터 공격을 받아온 것에 더하여, 이제는 성적 자유주의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성폭력'이란 흔히 생각하고 있듯이 '강간'이나 '성추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이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성희롱 - 성추행 - 강간미수 - 강간과도 같은 남성성기 중심의 도식적인 성폭력 구분은 피해자에게는 무의미할 수 있다. 즉 강간은 매우 나쁜 범죄이고 언어적 성폭력은 가벼운 일이라고 단순하게 치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성폭력의 판단기준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있다.

성폭력의 기준이 '거부'의 유무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거부'가 성폭력여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거부를 표시하기 이전의 상태를 '무언의 동의' 상태로 전제하는 것이다. 즉 이는 남성들이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일방적으로 투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이다. 또한 이는 성폭력에 대한 모든 해명과 입증의 책임을 피해자 여성에게 전가하는 셈이 된다.

하지만 '동의'라는 개념 역시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뜻하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동의가 있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성폭력을 동의 여부의 문제로 볼 때 여성이 동의나 거부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것은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다. 기존의 불평등한 젠더 구조 안에서 여성은 성적인 주체로 자리 잡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문제가 생겼을 때, '동의' 혹은 '거부'의 의사를 여성이 얼마나 밝혔는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구했는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폭력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괴롭혀진 가해자와 거기에 채수 없게 걸린 피해자'로 치환되어 버린다. 성폭력은 우리 일상의 성폭력적인 문화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자의 도덕성만을 비난하면서 쉽게 자기 자신을 가해자와 분리시켜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이 발생되고 용인되기 쉬운 문화 자체를 고민하고, 잘못된 성문화를 바꾸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중심주의'의 원칙을 잊지 말아야한다. 피해자중심주의란 성폭력이나 아니나의 기준을 피해자의 주관에 따르는 것이다. 나아가 사건 해결의 전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의 많은 경우가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남는 경우가 거의 없다. 또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것이 성폭력이다 아니다를 판정해줄 수 있는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은 피해자의 경험과 느낌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중심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얼마나 가해자중심의 사회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자신의 성폭력 피해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여자가 먼저 유혹한 것 아니냐, 지나치게 민감하게 그러는 것 아니냐' 등의 비난과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피해자의 사생활이 쉽게 이야기되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다. (관방 크기 내로 국자조를 좀 깎아야 할 때)

성폭력 피해자는 많은 경우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게 된다. 2차 가해는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가해자 혹은 가해자 주변 인물들이 협박을 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협 외에도 '별 건 아닌 일인데 왜 예민하게 그러느냐' '너가 잘 못한 것은 아니냐' '너의 옷차림이 이상하지 않았느냐'... 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는 것이 2차 가해에 포함된다.

또한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동의"가 이루어지는
상황" 의
의지와 무관하게
상황. 이 때라도 '무언의 동의'.

가해자중심으로 의도하고 있거나,
가해자중심으로 의도하고 있거나,